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11. 9 선고 2022가단11030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2022. 10. 26.

판결 선고2022. 11. 9.

주 문

1. 가. 별지 목록 제1, 2항 기재 부동산 중 D의 각 3/7 지분에 관하여 2019. 4. 5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를 취소한다.

나. D에게, 피고 C는 위 가.항 기재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소유지분에 관하여, 피고 B와 C는 위 가.항 기재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소유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B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나. 피고 C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이순형

별지